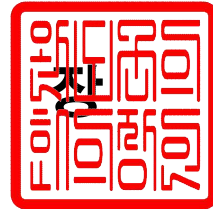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

「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27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

2. 발 의 자 : 조 인 호 의원

3. 개정이유
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라 심야시간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(안 제3조)
- 재정지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(안 제4조, 안 제5조)
-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(안 제6조)

5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5. 27 . ~ 2024. 6. 1.

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 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7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부. 끝

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심야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완도군 내 약국으로서, 군민에게 심야시간대(공휴일의 심야시간대를 포함한다)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)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, 방법,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공공심야약국의 관리)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

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·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)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3. 「약사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
4.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금의 환수)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